



제421회 국회(임시회)
제 1 차 국 방 위 원 회

한국유격군 지원에 관한 법률안

검 토 보 고

〈한국유격군기념사업회 설립 근거 마련〉

■ 한기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570호)

2025. 2.

국 방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오명호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1
III . 주요내용	2
IV . 검토의견	4
1. 제정안 발의 배경 및 제정 필요성	4
2. 제정안의 주요내용 및 구성	9
3. 주요 조문별 검토	11
가. 제명	11
나. 정의(안 제2조)	12
다. 기념사업회의 사업(안 제6조)	14
라. 국유재산 등의 무상대부(안 제15조)	16
마. 결산보고(안 제19조)	18
바. 지원(안 제22조)	20
사. 시행일(안 부칙 제1조)	2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한기호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4. 11. 14.
3. 회 부 일 : 2024. 11. 15.

II.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반만년의 역사 이래 숭한 외침과 내란 속에서 스스로 적에 대항하여 싸운 의로운 의병이 있음. 특히, 한국유격군은 대한민국의 국력이 쇠약했던 6·25 전쟁 기간 국군의 군사력이 미치지 않았던 서해 도서 지역 등을 수호하며, 적 지역으로 침투하여 첩보 및 유격작전을 수행하였음.

이에 자발적으로 유격군을 결성하여 대한민국을 지켜냈던 이들을 기리고 지원·예우하기 위하여 별도의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실정임.

또한 서해도서 지역에 대한 도발과 NLL 무력화 시도가 계속되고 있는 현실에서 6·25 전쟁 당시 자체적으로 유격군을 결성해 서해도서를 지켜낸 역사적 사건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를 기념하며, 「6·25 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를 위하여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며 특별한 희생을 한 한국 유격군 대원과 그 유족의 국가적 자긍심과 의병정신을 선양하고 궁극

적으로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함.

Ⅲ. 주요내용

가. 한국유격군기념사업회를 설립하여 서해도서 지역 수호와 적 지역으로 침투하여 첩보 및 유격작전 등의 비정규전에서 특별한 희생을 한 한국유격군의 대원과 유족 등에 대하여 국가가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그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한국유격군기념사업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도록 함(안 제4조).

다. 기념사업회는 한국유격군기념관 및 기념탑을 건립·운영하고, 기념관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 및 조사·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사업회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념사업회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에도 불구하고 기념사업회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바. 기념사업회는 기념관의 관람료와 기념관 자료 또는 기념관 시설의

이용에 대한 이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사. 기념사업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당해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도록 함(안 제18조).

아. 국방부장관은 기념사업회의 업무를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IV. 검토의견

1. 제정안 발의 배경 및 제정 필요성

- 6·25전쟁 중 활동한 비정규군들은 군번과 계급도 없이 자발적으로 결성된 유격대원(한국유격군)으로 1953년 7월까지 2년여간 황해도와 평안 남·북도, 함경남·북도 등 작전지역에서 약 30여개의 단위 부대로 편성되어 미8군 및 미극동군사령부와 연계하여 유격작전을 전개하였음.

[제정안의 ‘한국유격군’ 정의]

구분	정의	비고
한국유격군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조직 또는 부대의 대원인 <u>비정규군</u> 공로자로 결성된 단체	제정안 제2조제1호
비정규군	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기간 동안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아닌 신분으로 다음 각 목의 조직이나 부대에 소속되어 비정규전을 수행한 사람을 말한다. 가. 미국 극동군사령부 주한연락처(Korea Liaison Office) 나. 미군 8240부대(한국군 8250부대로 전환된 인원)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이러한 한국유격군은 북한지역 연안 일대와 적지 내륙에서 해안선 침투 상륙작전, 공산군배후 습격, 교량·교통망 파괴, 공수특전 침투 등의 전투활동을 통해 함경도와 평안도 연안의 2개 군단, 북강원도

와 함경도 연안의 1개 군단 등 공산군 3개 군단을 견제하는 전략적 효과를 거두었고, 남포항과 원산항의 입구를 봉쇄하는 동·서해 제해권 확보에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남.

□ 국방부에 따르면, 한국유격군은 외국군 소속으로 첩보수집 등의 비정규전을 수행한 부대인 KLO(주한연락처: Korea Liaison Office)¹⁾와 미군 8240부대, 미국 극동군사령부 첩보부대·중앙정보국 첩보부대 및 6·25 전쟁 이전 대북유격부대(호림부대) 등 약 21,600여 명으로 파악되고 있음.

[한국유격군(6·25 비정규군 보상법에 따른 비정규군) 현황]

구 분	대 상 부 대	운 영 인 원
법	미국 극동군사령부 주한연락처(KLO)	1,000여 명
	미군 8240부대(유엔군 주한 유격부대)	18,100여 명
시행령	미국 극동군사령부 첩보부대(6004부대)	700여 명
	미국 중앙정보국 첩보부대(영도유격대)	1,200여 명
위원회 인정 (시행령 제2조제3호)	호림부대(6·25 전쟁 이전 대북유격부대)	600여 명
	제8군정보연락장교단(육군첩보대 모체부대)	미상
계	6개 부대	약 21,600여 명

* 출처: 국방부

□ 이러한 한국유격군에 대해서는 국가를 위하여 중대하고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것에 대한 공로금을 보상하기 위해 현재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1) 미 극동군사령부가 1949년 6월 1일 북한의 정부기관, 군 및 산업기관에 침투하여 정보를 수집하는 등의 첩보활동을 위하여 정보참모부에 설치한 부대

보상에 관한 법률」²⁾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

- 제정안은 한국유격군에 대한 공로금 등 금전적인 보상과 별도로 ‘한국유격군기념사업회’의 설립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의 합당한 예우와 충분한 지원이 체계적·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 이들의 명예를 선양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과 한국유격군에 대한 기념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영웅적인 유격군 역사를 후세대에게 전승되도록 함으로써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자긍심 고취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여 궁극적으로 사회적 통합과 화합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취지의 타당성이 인정됨.
- 다만, 현재 「전쟁기념사업회법」에 따른 전쟁기념사업회에서는 ‘전쟁기념관 및 기념탑의 건립·운영, 기념관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 및 조사·연구, 전쟁에 관한 학예활동 및 전쟁사 연구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바, 한국유격군 기념관 건립, 학예활동 및 한국유격군에 관한 전사 및 역사 연구 등 제정안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입법취지는 일부 반영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2) 2020년 9월 9일 발의(의안번호 제2103686, 한기호의원 대표발의), 2021년 3월 24일 본회의 통과

[「전쟁기념사업회법」에 따른 전쟁기념사업회 수행사업]

1. 전쟁기념관과 및 기념탑의 건립·운영
2. 기념관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 및 조사·연구
3. 기념관 자료 및 기념사업에 관한 홍보·교육과 이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배포
4. 전쟁에 관한 학예활동
5. 전쟁사 연구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또한 현재 6·25전쟁에 참전했던 사람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인정되는데, 제정안과 같이 참전유공자 중 한국유격군에 대해서만 특별히 기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참전유공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국방부는 유격군의 공로를 인정하고 그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기념사업회 설립 등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을 통해 기 보상³⁾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보훈선양 사무·발전업무에 대한 국가보훈부 소관의 원칙, 다른 6·25 참전자와의 형평성 및 재정 소요 등을 고려할 때 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3) •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현황 : 총 3,859명('24.12.15. 기준)

* 신청 4,820명 중 심의를 통해 3,859명을 비정규군 공로자로 인정, 약 367억 공로금 지급

* 공로자 1인당 1천만 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민법 상속규정에 따라 지급)

□ 기획재정부도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을 통해 기 보상 및 예우가 이루어지고 있고, 타 참전단체와의 형평성 및 재정소요 확대 우려 등을 이유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유사 기념사업회 현황>

- 명칭: 독도의용수비대 기념사업회
- 법적 근거 : '05.7.29.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제정,
'05.10.26. 시행령 제정
- 법인 설립 허가 : '08.12.29.(국가보훈부) / 기념사업회 개소 : '09.2.5.
- 독도의용수비대 기념관 준비 : '11~'17. / 준공 : '17.10.27.
- * 부지 : 울릉군 소재(울릉군 무상 대여) / 비용 : 130억 원

• 기념사업회 및 기념관 예산 현황(최근 5년)

(단위: 백만 원)

연도	계	기념사업회 지원 (단위사업 : 기념사업)	기념관 관리운영 (단위사업 : 현충시설)
'24	1,531	794	737
'23	1,456	794	662
'22	1,352	794	558
'21	1,404	849	555
'20	1,404	847	557

• '24년 기념사업회 및 기념관 세출예산

(단위: 백만 원)

구분	기념사업회 지원	기념관 관리운영
세부	794 (대원/유족지원 153, 기념사업 290, 법인관리 351)	737 (인건비 268, 기본경비 369, 기념관 사업비 100)

2. 제정안의 주요내용 및 구성

□ 제정안은 한국유격군의 특별한 희생에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위해 한국유격군기념사업회의 설립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한국유격군기념사업회의 설립(안 제4조), 정관(안 제5조), 사업(안 제6조), 임원·이사회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13조) 및 재정관련 사항(안 제14조~제19조) 등을 규정한 23개 조문의 본칙과 시행일 등 5개 조문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특별한 대상을 기념하는 사업의 추진을 위해 기념사업회의 설립근거를 법률로 규정한 유사입법례로 「전쟁기념사업회법」,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등이 있는데, 제정안은 이들 법률과 체계와 구성 등에 있어서 거의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제정안의 체계 및 구성에 있어서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일부 미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하 개별 조문별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음.

[「한국유격군 지원에 관한 법률안」 조문 구성]

제정안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3조(법인격)	제3조(법인격)
제4조(기념사업회의 설립)	제4조(설립)
제5조(정관)	제5조(정관)

제6조(사업)	제6조(사업)
제7조(임원)	제7조(임원)
제8조(임원의 임기)	제8조(임원의 임기)
제9조(임원의 직무)	제9조(임원의 직무)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제11조(이사회)	제11조(이사회)
제12조(이사회의 기능)	제12조(이사회의 기능)
제13조(사무처)	제13조(사무처)
제14조(보조금 및 출연 등)	제14조(보조금 및 출연)
제15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제15조(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제16조(관람료 및 이용료)	제16조(관람료 및 이용료)
제17조(회계연도)	제17조(회계연도)
제18조(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제18조(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제19조(결산보고)	제19조(결산 보고)
제20조(자료의 열람·복사 등의 요청 등)	제20조(자료 제공의 요청)
제21조(지도·감독)	제21조(지도·감독)
제22조(지원)	
제23조(준용)	제22조(준용)
<부칙>	
제1조(시행일)	
제2조(설립준비)	
제3조(임원의 임기 기산일에 관한 특례)	
제4조(경비부담)	
제5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3. 주요 조문별 검토

가. 제명

- ☐ 제정안의 제명은 ‘한국유격군 지원에 관한 법률안’으로 규정하고 있음.
- ☐ 일반적으로 법률의 제명은 알기 쉽고 간결하여야 하며, 주요 규정 내용을 잘 대표할 수 있어야 함.

법률 제명 기본원칙(「법제이론과 실제」, 국회사무처 법제실, 2019)

- ① 알기 쉽고 간결하여야 한다.
- ② 주요 규정내용을 잘 대표할 수 있어야 한다.
- ③ 다른 법률과 혼동되거나 일반국민들이 오해할 소지가 있는 제명은 피하도록 한다.
- ④ 불가피하게 전문 외래어를 사용할 경우에는 우리말의 표현을 함께 표기할 수 있다.

- ☐ 제정안은 한국유격군의 대원과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위해 ‘한국유격군기념사업회’를 설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제정안의 주된 내용이 한국유격군기념사업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법인격, 설립, 정관, 사업, 임원·이사회·사무처, 재정관련 사항 등)으로 규정내용의 대표성을 고려하고, 유사입법례인 「전쟁기념사업회법」,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을 참고하여 제명을 ‘한국유격군기념사업회법’으로 수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⁴⁾.

4) 다만, 유사입법례 중에는 ‘독도의용군수비대기념사업회’의 설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법률 제명을 제정안과 같이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음.

나. 정의(안 제2조)

- 제정안 제2조제1호에서는 한국유격군을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조직 또는 부대의 대원인 비정규군 공로자로 결성된 단체로 정의하고 있음.

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한국유격군”이란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조직 또는 부대의 대원인 <u>비정규군 공로자로 결성된 단체</u>를 말한다. 2. “유족”이란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서는 ‘비정규군’과 ‘공로자’를 각각 정의하고 있음.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u>비정규군</u>”이란 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기간 동안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아닌 신분으로 다음 각 목의 조직이나 부대에 소속되어 <u>비정규전을 수행한 사람</u>을 말한다. 가. 미국 극동군사령부 주한연락처(Korea Liaison Office) 나. 미군 8240부대(한국군 8250부대로 전환된 인원)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 2. “비정규전”이란 적의 점령·지배·활동 지역(이하 “적 지역”이라 한다)으로 침투하여 수행한 적 병력살상, 주요시설 파괴, 화력유도 등 유격 또는 첩보수

집 활동을 말한다.

3. “공로자”란 비정규군으로서 특수하고 중대한 임무를 수행하였거나 특별한 희생을 하여 그 보상 필요성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 제4조제1항에 따른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공로자로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4. “유족”이란 공로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 여기서 공로자는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공로자로 인정된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제정안에서 한국유격군을 ‘비정규군 공로자로 결성된 단체’로 규정하고 있어 비정규군 공로자로 신청하지 못한 유격군⁵⁾ 등이 제외⁶⁾될 수 있으므로 제정안의 한국유격군 정의 규정에서 ‘비정규군 공로자’ 대신 ‘비정규군’으로 수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⁷⁾.

□ 한편, 정의규정 중 ‘유족’에 대해서는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공로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 규정하여 인용조문을 활용하고 있으나, 유족의 범위에 대한 가독성을 높이고 법률에 대한 내용은 해당 법률 내에서 최대한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점에서 유족의 정의를 “한국유격군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 수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5) 비정규군 보상법상 보상대상자이나, 유족없이 전사하여 비정규군 공로금을 신청할 수 없는 유격군 전사자와 보상신청을 미처 하지 못한 미신청 유격군 등

6) 국방부에 따르면 6·25 전쟁시 유격대 활동 중 사망하여 순직한 대원 3,928명 중 비정규군 공로자로 인정받은 경우는 9명임.

7) 국방부도 동일한 의견 제시

다. 기념사업회의 사업(안 제6조)

- ☐ 제정안 제6조제1항에서는 기념사업회에서 수행하는 사업으로 ‘한국유격군기념관 및 기념탑의 건립·운영’, ‘한국유격군에 관한 학예 활동’ 등을 규정하고 있음.

제 정 안
제6조(사업) ① 기념사업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한국유격군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 및 기념탑의 건립·운영 2. 기념관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 및 조사·연구 3. 기념관 자료 및 기념사업에 관한 홍보·교육 및 이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4. 한국유격군에 관한 학예활동 5. 한국유격군에 관한 전사 및 역사 연구 6. 한국유격군의 대원과 그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7. 한국유격군총연합회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 8. 제1호, 제6호, 제7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 ☐ 제정안 제6조제1항제8호에서는 기념사업회가 수행하는 기본 사업 외에 일부 사업(제1호, 제6호, 제7호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하여 기본사업에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이와 관련된 사업을 폭넓게 수행토록 하려는 것이나, 규정된 부대사업에서 ‘제2호~제5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을 제외할 특별한 이유가 있어 보이지 않으므로 이를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 유사입법례에서도 기본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음.

[유사입법례 기념사업회 사업 내용]

구분	내용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제6조(사업) ① 기념사업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독도의용수비대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 및 기념탑의 건립·운영 2. 기념관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 및 조사·연구 3. 기념관 자료 및 기념사업에 관한 홍보·교육 및 이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4. 독도에 관한 학예활동 5. 독도에 관한 역사 연구 6. 독도의용수비대의 대원과 그 유족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전쟁기념사업회법	제5조(사업) ① 기념사업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전쟁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 및 기념탑의 건립·운영 2. 기념관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 및 조사·연구 3. 기념관 자료 및 기념사업에 관한 홍보·교육과 이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배포 4. 전쟁에 관한 학예활동 5. 전쟁사 연구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민주화운동기념 사업회법	제6조(사업) 기념사업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민주화운동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의 건립 및 운영 2.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정리하기 위한 자료의 수집, 보존, 전산화, 관리, 전시, 홍보, 조사 및 연구 3. 민주화운동 유적의 보존, 관리, 조사, 홍보 및 연구 4. 민주화운동의 기념 및 계승을 위한 사업 및 행사 5. 민주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 6. 기념사업회 및 기념관에 대한 홍보와 이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7. 기념사업회의 운영을 위한 수익사업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라. 국유재산 등의 무상대부(안 제15조)

- 제정안 제15조는 기념사업회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제 정 안
제15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념사업회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에도 불구하고 기념사업회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 기념사업회 사업성격의 공공성을 인정하고 기념사업회의 설립과 운영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 국·공유재산의 무상 대부가 필요하다는 점과 유사입법례와의 형평성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취지인 것으로 보임.

구분	내용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제15조(국유재산·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념사업회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기념사업회에 <u>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無償)으로 대부할 수 있다.</u>
전쟁기념사업회법	제13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① 국가는 기념사업회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기념사업회에 <u>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u>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15조(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기념사업회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기념사업회에 <u>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u>

□ 다만, 국유재산의 사용료 등의 감면, 사용허가, 대부 및 양여 등의 특례를 규정한 「국유재산특례법」 제4조⁸⁾에서는 국유재산특례는 「국유재산특례법」의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별표는 「국유재산특례법」 외의 다른 법률로 개정할 수 없도록 하여 개별법에서 국유재산특례를 정하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음.

[국유재산특례법 별표상 유사입법례 규정]

연 번	국유재산특례 근거 법률	특례유형	존속기한
59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제15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71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15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144	「전쟁기념사업회법」 제13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 따라서 제정안에 따른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를 위해서는 「국유재산특례법」의 별표의 개정이 전제되어야 하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⁹⁾. 제정안의 동 조문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무상대부 등의 효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동 조문은 삭제를 하는 방안과 동 조문을 유지하고 향후 「국유재산특례법」의 별표를 개정하여 동 조문의 효력을 사후적으로 보완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

8)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4조(국유재산특례의 제한) ① 국유재산특례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다.

② 이 법 별표는 이 법 외의 다른 법률로 개정할 수 없다.

9) 일반적으로 국유재산특례를 정하는 법률을 제·개정할 경우, 제·개정안과 더불어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별표 개정)을 함께 발의하나, 동 제정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발의하지 않았음.

□ 한편, 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관리 공유재산에 대해서도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공유재산에 대한 무상 대부 등을 규정한 법률은 「지방재정법」이 아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므로 이를 적절하게 수정할 필요가 있음.

마. 결산보고(안 제19조)

- 제정안 제19조는 기념사업회의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를 해당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제 정 안
제19조(결산보고) 기념사업회는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해당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정안 제14조제1항¹⁰⁾에 따라 기념사업회는 사업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매 회계연도별로 사업 계획서 및 예산서에 대해 사전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사후적으로도 세입·세출결산서를 보고하도록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조치로 보여짐.
- 다만, 제정안 제21조¹¹⁾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기념사업회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실효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유사입법례와 같이 분기별 사업계획 집행 실적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10) 제정안 제14조(보조금 및 출연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사업회의 사업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11) 제정안 제21조(지도·감독) 국방부장관은 기념사업회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유사입법례]

구분	내용
전쟁기념 사업회법	제17조(사업계획 집행 실적 및 결산의 보고) ① 기념사업회는 매 분기별로 사업계획 집행 실적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기념사업회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해당 회계연도가 끝난 후 60일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바. 지원(안 제22조)

- 제정안 제22조는 한국유격군 대원과 유족에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제 정 안
제22조(지원) 한국유격군 대원과 그 유족 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禮遇)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적용대상 국가유공자(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전상·순직·공상 군경, 참전유공자 등)에 대해 보훈급여금, 교육·치료·의료 지원 등의 예우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 생계지원금, 의료지원, 양로 지원 및 요양지원 등의 예우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도록 규정¹²⁾하고 있음.

1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0.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0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예우에 관하여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다.

□ 따라서 제정안 제22조의 지원 규정이 없더라도 한국유격군 등에 대한 지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연히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조문의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동 조문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6·25전쟁”이란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및 1948년 8월 15일부터 1955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중 별표의 전투를 말한다.
2. “참전유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6·25전쟁이나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 참전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불명예스러운 체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 가.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군인 나.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 다.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 라.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한 사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 마.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

□ 국가보훈부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아닌 다른 법률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보훈법 체계와 부합하지 않으며, 유격대원은 등록 신청 후 심의를 통해 국가유공자(전몰·전상군경)

또는 참전유공자로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동 조문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사. 시행일(안 부칙 제1조)

- ☐ 제정안 부칙 제1조에서는 이 법의 시행일을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 정 안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 일반적으로 법률에서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 경우, 기관의 설립이나 인력 채용 등에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시행일까지 일정기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음.

시행일 법제 일반원칙(「법제이론과 실제」, 국회사무처 법제실, 2019)

법률의 시행에 따라 하위 법령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으나, 법률의 시행이 긴급한 경우에는 3개월의 유예기간을, 기관 설립이나 인력의 채용 등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1년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일반적임.

- ☐ 제정안도 안 6조제4항 등 다수의 조항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3월의 유예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나, 법인 설립 등에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로 수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구분	내용
안 제6조4항	제4조(기념사업회의 설립) ④ 기념관 자료의 수집·보존·관리 및 전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u>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안 제15조제3항	제15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부 또는 양여의 조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u>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안 제20조제2항	제20조(자료의 열람·복사 등의 요청 등) ② 기념사업회는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열람·복사 및 위탁전시 등을 요청할 때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에게 <u>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u>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문 의 처

02)6788-5308